

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2017. 02. 23(목)

社團法人 韓國女子프로골프協會

KLPGA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6장(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하여 설치하며 선거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협회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선거절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 협회 임원은 정관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방식은 추대와 선거로 구분한다.
- 본 규정은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적용되며, 적용되는 협회 임원의 범위는 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1인 포함),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단, 추대의 형식으로 선출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협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선거사무관장)

임원선거를 위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으로 관장하고, 협회 사무국은 선거사무 행정업무를 협조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자격·임기 및 업무

제5조(구성·자격 및 임기)

- 본 위원회는 정관 제6장(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 협회는 임원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개최 최소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인(위원장 1인,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원)은 협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촉하며, 위원장은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임원선거가 종료되는 총회개최 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또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징계할 경우는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로 연장한다.
6. 본 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거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임원선거 공고
2. 입후보 등록고지
3.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4.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확인·관리
5. 선거(투표·개표·검표)에 관한 업무
6. 개표 후 당선자 보고 및 발표
7.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
8. 입후보자의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9. 기타 선거 업무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
10. 본 규정의 개정과 관한 사항

제3장 선거운영

제7조(선거일 공고)

임원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개최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는 총회개최 최소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이 확정된 다음날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입후보 자격)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17조(감사의 직무)에 부합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고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으며,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임원 입후보자 등록)

1.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개최 5일 이전

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임원 입후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가.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나. 임원 입후보 이력서 1부
 - 다. 임원 입후보 서약서 1부
 - 라.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1부
 - 마. 주민등록등본 1부(신원 확인용)
2. 임원 입후보자는 입후보 가능 직위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한 직위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입후보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없으며,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이 상실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나. 미성년자
-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 자
-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 협회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징계(출장정지, 자격정지)중이거나, 징계 (출장정지, 자격정지)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 협회 회비 및 벌칙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임원 입후보자 명단과 각 후보자의 프로필 및 출마 포부서를 협회 홈페이지 내 멤버존(회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1.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가. 대의원에게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나. 상대 입후보자를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 다.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및 회원 친목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마. 선거관리위원회 및 협회 임직원은 특정인을 지지 응호, 격려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제13조(대의원명부 및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까지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총회 당일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사퇴)

- 1.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임원 후보자의 사퇴 시기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 18:00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 전 임원 입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 2. 임원 입후보자들의 정견발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정견발표 시 필요에 따라 PPT 및 유인물배포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투표방법)

- 1.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2.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17조(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전일까지 준비하고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2. 투표용지는 총회 개회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개봉하도록 한다.
- 3. 투표용지에는 각 임원후보자의 기호와 성명(한글)을 기재하고, 협회 직인 날인과 투표관리관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위원의 사인을 직접 기재한 다음 배포하도록 한다.

제18조(투표원칙)

- 1. 임원선출은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2.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3. 동표일 경우 동표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4. 정관 제4장(총회) 제25조(총회의결 제한사유)에 따라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 시 의장 또는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찬반)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5. 대의원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한 것
6. 투표의 용례 이 외의 기호, 형태 등으로 의사를 표시 한 것

제20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후 개표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제4장 당선결정

제21조(당선 선포)

정관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제4장(총회)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본 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19조(투표원칙)에 따라 임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해야 한다.

제22조(당선 무효)

임원 당선인이 본 규정 제3장(선거운영) 제10조(임원 입후보자의 결격사유), 제12조(선거운동 및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3조(당선인 공고)

임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당일 임원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재 선거)

1. 본 규정에 의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 1항의 재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개정)

본 규정 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일반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과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23. 제정)

본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